#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41 발의연월일: 2021. 3. 2.

발 의 자:전주혜·조해진·추경호

강대식・이 용・조수진

서일준 • 윤창현 • 정진석

박완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층간소음을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정하면서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예방에 대한 자발적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관리주체의 층간소음 발생에 대한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 권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 신청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 휴교 등 실내생활 시간이 늘어나면서 충간소음 분쟁도 크게 늘어남.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0년 '충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충간소음 민원은 총 4만 2,250건으로 전년보다 60.9% 급증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고, 보복 소음 등이웃 간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등 초기 갈등 관리가 중요한 과

제가 되었음.

관련하여 주민들간 보복성 소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충간소음의 범주에 이러한 소음을 포함시키고, 충간소음 문제의 적극적이고 자율 적인 조정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입주자 등에 대하여 위협하거나 피해를 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소음을 포함하고,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각 호 신설 등).

#### 법률 제 호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 2.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 3. 다른 입주자등에 대하여 위협하거나 피해를 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소음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음
- ⑦ 입주자등은 충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충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충간소음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충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정한다.
-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 2. 분쟁의 자율적인 조정 및 권고

-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4.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	
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u>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	
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	
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	
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u> &lt;신 설&gt;</u>	1.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
	하는 소음
<u> &lt;신 설&gt;</u>	2.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u> </u>	3. 다른 입주자등에 대하여 위
	협하거나 피해를 줄 목적으로
21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소음
<u> &lt;신 설&gt;</u>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지리노 4.0
(A) ====	<u>정하는 소음</u> ② a ② (천체과 가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 ②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 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 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 다.

- 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 관 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 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층간소 음 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 실관계 확인
  - 2. 분쟁의 자율적인 조정 및 권 卫
  -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4.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